

「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『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』」

개정 촉구 건의안」에 대한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268호

「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「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」 개정 촉구 건의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는

최근 청년의 사회 진출과 결혼·출산 시점이 늦어지면서 청년의 연령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「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청년 지원 연령을 여전히 만 34세로 규정하고 있어, 실제 현장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특히 가족돌

봄청년과 고립·온둔 청년 등 위기 청년은 더욱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있으므로, 이들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 연령의 상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

□ 전의안의 주요 내용은

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위법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,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「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청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할 것을 국회와 정부(보건복지부)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본 의원이 제안한 전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,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